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8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김성원·고동진·안상훈

이종배 • 구자근 • 박충권

김위상 · 김종양 · 유용원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

상을 위하여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법률 제 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군인 가족의 날) ① 군인의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군인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매년 국군의 날 전(前)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군인 가족의 날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6조(군인 가족의 날) ① 군인 |
| | 의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 |
| | 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군인 가 |
| | 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긍지 |
| | 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이에 |
| |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 |
| | 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
| |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매년 |
| | 국군의 날 전(前)주 금요일을 |
| |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한다.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 |
| | 인 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
| | 행사 등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
| | <u>있다.</u> |
| | ③ 제2항에 따른 군인 가족의 |
| | <u>날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u> |
| |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